

반 소 장

사 건 2000가단000 건물명도

피고(반소원고)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원고(반소피고)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(반소원고)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.

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 에게 금 21,382,368원 및 이에 대한 건물명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피고(반소원고)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
 - 가. 피고(반소원고, 다음부터 '피고'라고만 함)는 20○○. 10. 20. 소외 ◈◈◈ 소유의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 주택(다음부터 '이 사건 주택'이라고

만 함) 1층부분에 관하여, 소외 ◈◆◆와 임대차보증금 24,000,000원, 임생자 기간 ○○개월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(을 제1호증 임대차계곡 서 참조),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20○○. 10. 31. 전입신고를 마쳤고(을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참조), 20○○. 4. 8.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. 그 뒤 피고는 20○○. 6. 12.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◈◆◆와 임대차보증금을 금 26,000,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(을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).

- 나. 한편,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○○. 9. 28. 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경○○○호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바, 이사건 주택은 소외 ◈◆◆에게 매각되어 20○○. 10. 17. 위 소외 ◈◆◆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, 20○○. ○. 다시 원고(반소피고, 다음부터 '원고'라고만 함)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(을 제4호증의 1.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).
- 다. 그리고 피고는 위 나.항의 경매절차에서 금 26,000,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금 2,167,632원을 배당 받았습니다(을 제5호증 배당표 참조).
- 라.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주택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임차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다53628 판결 참조),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습니다.
- 마. 따라서 원고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,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금 24,000,000원 중 피고가 배당 받은 금 2,617,632원을 공제한 금 21.382.368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잔액 금 21,382,368원 및 이에 대한 건물명도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

1. 을 제1호증

임대차계약서(증액되기 전)

1. 을 제2호증

주민등록표등본

1. 을 제3호증

임대차계약서(증액된 이후)

1. 을 제4호증의 1,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을 제5호증

배당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반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반소원고(본소피고) ⟨★★★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ㅏ소
공
)
[민사
취하
공평
없이
부적
의 동
선고
1
또는
아니
보게
=1 ¬
.청구
는 방 도 2
동의
.송절 (어지
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(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
994
웨 기
행기
하지 인이
인의 = 경
= 彡 .급인
·ㅂ년 물인
. ㄹ ᆫ 제3조
개이고 법원
계에
´" " ·반환
이행
ㅗ 사
그 사 이 있



※ (1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 소장의 보정, 반소